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45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김용태·조은희·김성원 서천호·김대식·이성권 박충권·고동진·엄태영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격장 등에서의 사격 훈련 일정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격 훈련 정보의 사전 통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입 시기 등에 따른 보상금의 공제·감액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질뿐 아니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기 위한 소음 측정·평가·분석 비용이 전체 소음피해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한 군사훈련을 제외하고는 군사격장의 사격 훈련 일정에 대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도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격 훈련 사전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일정을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군사작전 또는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사전 통보의 방법·절차, 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산출된 보상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상금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 보상금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사격 훈련 사전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일정을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군사작전 또는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사전 통보의 방법·절차, 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 ---------- ---------- ----------

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다만,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산출된 보상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상금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